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현장 출동 〉
■ 서영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89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V . 검토의견	5
1. 개정안의 내용	5
2. 현행법상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에 대한 현장출동	7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현장출동·조사 등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서영석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2025. 7. 1.
3. 회 부 일: 2025.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범죄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장애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학대피해장애아동의 범죄 조사 및 보호조치 과정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이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도 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여 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대피해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등).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에서 피해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및 조사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동행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에게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같이 아동학대범죄사건에 관한 비밀엄수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11조(현장출동) ① ~ ③ (생략) <u><신설></u>	제11조(현장출동)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된다는 신고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생략)

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생략)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

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제4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③ (생략)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그 기관장,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 직원과 그 기관장,-----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범
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
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
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
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
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
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
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
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
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
1항을 적용한다.

② . ③ (생략)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③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
죄) ① -----

-----그 기관장, 장애인권
익옹호기관의 직원과 그 기관
장,-----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3조(과태료) ①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3. <u>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 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 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u> 3의2. ~ 6. (생략) ② (생략)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 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 장과 <u>그 직원</u> 및 진술조력 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 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 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 다.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11조제 7항</u>----- ---<u>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직원 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u>----- ----- ----- 3의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 원의 의제) ----- -----<u>그 직원, 장애인권익옹 호기관의 장과 그 직원</u>----- ----- ----- ----- -----.
--	---

2. 현행법상 아동학대 및 장애인학대에 대한 현장출동

가.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의 현장출동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등 일정한 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제2조제4호),¹⁾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신속한 발견과 대응을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 시의 현장출동 등을 규정하고 있음.

1)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대)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에 따라 개시됨.

○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일상적인 보호·복지·교육, 피해 발생 시의 보호·복지 지원 및 의료·구급 지원 등 일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제10조제1항·제2항).²⁾

2)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가 이루어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또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나 수사를 실시하게 됨.

○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현장출동 시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에 대하여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함(제11조제1항).³⁾

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은 교육기관 등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현장에 출동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이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로 제한됨(제11조제2항).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현장조사뿐만 아니라 현장 외 조사를 할 수도 있으며, 현장 외 조사를 위하여 아동학대행위자 등에게 출석·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현장 외 조사 역시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허용됨(제11조의2).⁵⁾

○ 한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시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에게 그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고, 현장출동 시 동행한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음.

4)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5)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③ (생략)

나. 장애인학대 신고 시의 현장출동

□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직원의 현장출동에 관한 사항도 포함됨.

○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고,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 등을 의미하며,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살인, 상해·폭행, 유기·학대, 체포·감금, 협박, 강간·추행,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 등에 해당하는 범죄를 뜻함(제2조).⁶⁾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장애인학대관련범죄”란 장애인학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의 죄

2.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3.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 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의 죄

5.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장애인학대사건 등의 처리 절차도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 절차와 마찬가지로 신고에 따라 개시됨.

○ 장애인 대상의 학대나 성폭력범죄 등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등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⁷⁾⁸⁾

6.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및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및 제294조(미수범)의 죄
7.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10.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1.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48조(준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의 죄
12. 「형법」 제2편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중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제357조(배임수증제)의 죄
13.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14. 제8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죄
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3조(제18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의 죄
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및 제2항의 죄
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호 및 제11호의 죄
19. 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제59조의11에 따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지무요원을 포함한다)
2. 제32조의4에 따라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하는 자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 아동학대처벌법과 달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신고 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민간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포함되어 있음.⁹⁾

-
- 다른 활동지원인력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3. 「의료법」 제2조제1항의 의료인 및 같은 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의 장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의 의료기사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응급구조사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9.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1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1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1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제35조의2에 따른 가족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7.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 및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청소년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조 제8호의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20.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신청의 조사를 하는 자
 22.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 ⑧ (생략)

- 8) 「장애인복지법」은 신고대상범죄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전부가 아니라 장애인 대상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학대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 외의 기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도 신고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임.
- 9) 舊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및 舊 아동학대처벌법(2020. 3. 24. 법률 제170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등은 아동학대(범죄)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수사에 밀접한 조사업무를 공무원 아닌 사람이 주도하는 것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처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신고를 받아 수사하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그 수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음.

- 장애인학대사건 등의 경우에도 신고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수사를 실시하게 됨.
-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하고, 현장 출동 시 신고를 받은 기관은 다른 기관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함(제59조의7제1항).¹⁰⁾
-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질문 등을 할 수 있으며, 다만 이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조사는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로 제한됨(제59조의7제3항).¹¹⁾

10)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장애인학대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③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학대받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3.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아동학대 현장출동·조사 등

가. 검토의견

□ 안 제11조는 장애를 가진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를 받은 경우로서 피해아동의 장애가 의심된다는 신고내용이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에게 그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현장에 출동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됨.

○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범죄의 신고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에 이루어질 수 있는데, 개정안은 수사기관으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는 현행법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한 현장출동 요청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만 인정되고 있다는 점, 수사기관에 아동학대(범죄)가 신고된 경우로서 장애인학대(범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안 제11조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조사 참여는 아동 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인정되는 것과 같은 방식이며, 장애아동 대상의 아동학대(범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학대(범죄)에도 해당하므로, 사실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조사와 유사하게 됨.¹²⁾

- 아동학대처벌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아동학대(범죄)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나 대체로 전자가 후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구 분	아동학대처벌법	장애인복지법
학대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보호자의 유기·방임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
학대범죄*	-	(촉탁·승낙)살인
	(특수)상해·폭행, 폭행치상 등 유기·학대(치상), 아동학사	(특수)상해·폭행,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유기·학대(치사상), 아동학사
	(특수)체포·감금, 체포·감금치상	(특수)체포·감금, 체포·감금치사상
	(특수)협박	(특수)협박
	약취·유인, 인신매매, 약취·유인·매매 등 상해·치상	약취·유인, 인신매매, 약취·유인·매매 등 살인·치사, 약취·유인·매매 등 상해·치상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간음 등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상해·치상,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 간음 등
	(출판물)명예훼손, 모욕	(출판물)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주거·신체 수색
	강요	강요
	(특수)공갈	(컴퓨터등사용)사기, (특수)공갈
	-	(업무상)횡령·배임, 배임수증재
	재물손괴	재물손괴
	성희롱, 유기·방임, 구걸에 이용 등	성희롱, 유기·방임, 구걸에 이용 등
	아동학대살해·치사 등	-
	-	성매매 알선 등

* 아동학대처벌법의 경우 아동학대범죄,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장애인학대관련범죄

12) 다만,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조사업무를 주도하는 전담공무원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조사권한을 행사하게 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는 차이가 존재함.

□ 그 밖에 안 제35조, 제61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4조 등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현장출동와 조사 참여가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안 제11조의 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안 제61조 및 제63조는 안 제11조제7항에 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임.

- 단순한 현장조사 거부에는 과태료가, 폭행·협박 등을 통한 업무
수행 방해에는 형벌이 각각 부과됨.

○ 안 제62조는 안 제35조에 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 또는 그 기관장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임.

○ 안 제64조는 아동학대(범죄)의 조사 등에 참여하는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직원 또는 그 기관장을 뇌물죄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의제
하는 내용임.

나. 관계기관의 의견

- 법원행정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현장출동 및 조사 참여, 그 업무 수행 방해에 대한 제재 부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등에 대한 직무상 비밀누설죄 신설 및 뇌물죄에서 공무원 의제 등은 모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는 입장임.
- 법무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고, 다만 개정안과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된다는 신고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보다,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아동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임.
- 법무부는 법률의 취지는 다르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에서도 유사한 표현을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¹³⁾

문 의 처
02-6788-5051

1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 ② (생략)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 ⑤ (생략)